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219

발의연월일: 2024. 12. 5.

발 의 자:권칠승·박홍배·김 윤

서미화 · 김준형 · 송옥주

정준호 · 임호선 · 민병덕

전진숙 · 문금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,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,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, 인천, 부산, 대구, 대전,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. 또한,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.

이에,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여 의료 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,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2항 등).

법률 제 호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중 "보훈병원을"을 "보훈병원과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"보훈병원"을 "보훈병원과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(이하 "보훈병원등"이라 한다)"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보훈병원이나"를 "보훈병원등이나"로 하고, 같은 조제6항 전단 중 "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"을 "보훈병원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의료지원) ① (생 략)	제17조(의료지원) ① (현행과 같
	<u>수</u>
② 독립유공자가 질병(부상을	2
포함한다)에 걸리면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	
의료기관(「한국보훈복지의료	
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<u>보훈병</u>	<u>보훈병</u>
<u>원을</u> 포함한다) 또는 지방자치	원과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
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.	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
	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공공
	보건의료기관을
	<u>.</u>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⑤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	5
족은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	
법」 제7조에 따른 <u>보훈병원</u> 에	<u>보훈병원과</u>
서 진료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	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
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	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
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	설립·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
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	기관(이하 "보훈병원등"이라 한
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(減	<u>다)</u>
免)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	
	i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

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	
서 해당 <u>보훈병원이나</u> 다른 의	
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.	
	<u>보훈병원등이나</u>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75세	6
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	
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	
은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	- <u>보훈병원등</u>
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	
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	
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	
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	
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	

⑦・⑧ (생 략)

한다.

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

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

⑦ • ⑧ (현행과 같음)